

2022년 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 사업 시행공고

2022년도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「소상공인 업종연계 공동특화 지원」 사업을 시행하오니, 소상공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2. 5. 16.

소상공인연합회 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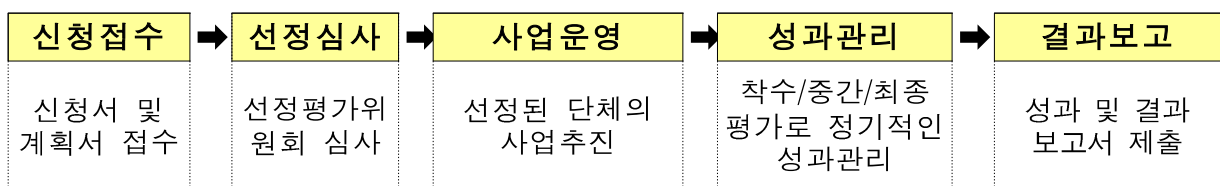
I 사업개요

□ 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사업 필요
- (목적)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이업종 연계 발전을 위한 교류 및 공동특화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

□ 사업개요

- (사업예산) 2.5억원
- (시행기간) 2022년 6월 ~ 2022년 11월
- (지원대상)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등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
- (지원규모) 13개 단체 내외, 단체별 최대 2,000만원
 - ※ 중복참여의 경우에도 1개 단체에 최대 지원금액 합계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- ※ 사업 컨소시엄 별 최대 4천만원 지원 가능
- (지원절차)



□ **공동이행방식**

- 다음 기본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 중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
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또는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
 -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등 「민법」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또는 단체

□ **기본요건**

-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
 - 사업참여 신청 및 정산보고 등 모든 사업 진행 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
- 지원분야

구 분	세부내용
네트워크 구축	업종간 기술교류에 필요한 워크숍, 세미나 등에 필요한 비용
R&D	업종간 협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
업종별 기술협업	업종간 협업을 위한 기술교육에 필요한 비용

※위 분야 외 별도로 제안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경우, '기타'로 제안 가능

□ **신청기간** : 2022. 5. 16. ~ 5. 27.

□ **신청방법** : 우편접수 (마감일 접수분까지 인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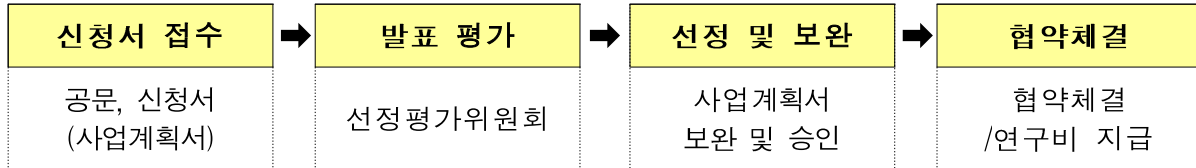
- * 제출처 :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, 5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지역팀
- * 연락처 : 1522-0500 (연결: 3번, 회원지역팀)

□ 제출서류

- 참가신청서 9부 (원본 1부, 사본 8부)
- 사업계획서 9부 (원본 1부, 사본 8부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단체 사업자등록증 (고유번호증), 사본 각 1부
- 단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
- 단체 설립근거서류 (설립허가증) 사본 각 1부
- 단체 가입회원 사업자번호(30명) 각 1부
 - * 가입회원 사업자등록증은 선정 후 제출 (선정 후 미제출 시 선정취소)
- 기타서류 (사업 선정·평가를 위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)

IV 절차 및 기준

□ 선정절차



□ 선정기준

- 발표평가 (평가 착안사항)
 - 단체의 역량 및 책임자(참여단체 포함) 기본 자격
 - 사업목표의 명확성, 사업추진 전략의 차별성, 사업내용의 적정성
 - 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, 사업결과와 본 과제 간 연계성,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종합평가
 - 발표 대상자, 최종 선정자 등 통보 안내는 이메일로 진행
 - 발표 시간은 신청자별 20분을 원칙으로 함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

○ 과제선정 및 보완

-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종단체를 대상으로, 선정평가 점수와 순위를 토대로 참여단체 최종후보자 선정
-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경우, 발표평가 시 검토된 보완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정 진행
 - *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을 요청할 경우,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 범위 등 필요사항 조정 가능
 - * 단체가 제출한 예산내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할 수 있음
- 선정 및 결과평가 시 정량적/객관적 성과지표 및 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적 결과를 제시해야 함
- 평가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함

□ 선정평가위원회

○ 위원회 구성

- 실무경험이 풍부한 업계전문가, 대학교수, 유관기관 임직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POOL을 활용하여 7인 내외로 구성

○ 위원회 역할

- 참여단체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및 사업계획서(목표, 내용, 사업비 등 필요사항) 조정에 관한 사항
- 진도관리 등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

V

계약 및 사업비 지원

○ 협약 체결

- 선정 및 보완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완료 후 협약 진행

○ 사업비 지원

-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 및 공법상의 의무를 짐

- 지급방법
 -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 됨
 - 사업착수 시 선급금 70% 이하, 사업 완료 보고 후 잔금 지급
 - 지원금 등록 및 지급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

VI 유의사항

□ 서류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

- 신청서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, 접수 전 이메일(hjk@kfme.or.kr)로 파일 제출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,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책임으로 함

□ 불공정행위 금지

- ① 참여단체 또는 계약상대자(이하 이 조에서는 “참여자 등”이라 한다)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
 - 1) 금품·향응 등의 공여·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
 - 2)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
 - 3)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 - 4) 하수급인 또는 자재·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
 - 5)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
- ② 참여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이

취소되거나 해지·해제될 수 있고,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

- ③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참여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④ 참여자 등은 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VII

문 의 처

□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지역팀

- 대표전화 1522-0500 (연결 3번, 회원지역팀)
 - 장기수 팀장, ☎ 070-4944-3498, ✉ kfme0701@kfme.or.kr
 - 김효정 과장, ☎ 070-4944-1942, ✉ hjk@kfme.or.kr

※ 별첨 : 신청서 서식 1부. 끝.